

의안번호	2215470
의 퇴 인	임호선의원
회 답 일	2026. 2. 20.
추계번호	25B736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7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을 위한 조치) 신설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을 포함한다)를 할 수 있음(제1항)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7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을 위한 조치)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¹⁾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정부가 이에 소요되는 경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3,360건이고, 피해액은 1조 2,578억원임

[표 1]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단위: 건, 억원)

연도	발생건수	피해액
2023	18,902	4,472
2024	20,839	8,545
2025	23,360	12,578

자료: 경찰청

- 다만, 현 시점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술의 내용 및 도입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는 관련 정보가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체적인 기술적 조치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개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음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표 2]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개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2026년)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개발	신종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가 비식별화된 디지털 범죄정보를 집적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구축과 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을 개발	5,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